

『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설치·구성 및 용도 등(안 제2조~제5조)
- 기금관리 공무원(안 제6조)
-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7조~제10조)
- 업무위탁 등 용자 및 임대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형곡동 비둘기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선산교리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을 정하여,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내 거주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,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